

전주지방법원 2024. 4. 18 선고 2022가단293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3. 14.

판 결 선 고 2024. 4. 18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, 2021. 12. 2. 체결된 재산분할을 금 35,807,0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,807,08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나.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12. 2. 체결된

재산분할약정은 35,807,088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.

나. 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금 30,956,402원 및 그 이자 금4,775,386원¹⁾ 및 독촉절차 비용 금75,300원의 합계 금 35,807,088원 및 금 30,956,4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앞서 본 증거, 이 법원의 C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익산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회신, 주식회사 D 및 C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2021. 12. 2. 재산분할약정 당시 B은,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 시가는 365,000,000원, 제2부동산 시가는 99,993,000원이고,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채무 349,999,996원, 제2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채무 55,405,493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위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B은 채무초과 혹은 무자력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채무자인 B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

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) 피고는, 위 재산분할약정 당시 B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도로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, 미회수 채권 2억 원 및 E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)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피고는 B과 이혼하면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며 B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), 피고와 B이 오랜 시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1) 관련 법리

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,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28819, 28826 판결 등 참조).

2) 가액배상의 여부 및 범위

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,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

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.

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 시가는 365,000,000원, 제2부동산 시가는 99,993,000원이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349,999,996원, 제2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55,405,493원이므로,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부동산에 관한 위 재산분할약정3)은 가장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5,807,0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5,807,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35,807,0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5,807,0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관용

별지

1) 이자는 구상금 30,956,402원 중 금30,956,193원에 대하여, ① 2022. 8. 30.부터 2022. 11. 29.(지급명령 송달일)까지는 연 8%금624,212원, ② 2022. 11. 30.부터 2024. 1. 11.까지는 연 12% 금4,151,174원의 합계금 4,775,386원 (① 금624,212원 +② 금4,151,174원)

(갑제16호증의 2 참조)

2) 피고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3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, 제출된 서면만 진술 간주되고 증거가 변론에서 제출되어 있지 않다. 설령 B의 채권 관련 증거가 제출(2024. 1. 29.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)된다 하더라도 위 채무자들에게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 위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, 위 채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B의

적극재산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인다.

3)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약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, 2번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는것만으로도 원상회복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.